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·변경 과정에서 장애물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
존치장애물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「공항시설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7
3호, 2023.4.18. 공포, 2023.10.19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
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존치장애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(안 제8조
제2항제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4조제4항”을 “법 제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5항”을 “법 제4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4조제2항”을 “법 제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4. 법 제4조제3항제3의2호에 존치장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4조제3항”을 “법 제34조의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34조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34조의2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법 제34조제7항 후단”을 “법 제34조의2제8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호 중 “법 제34조제9항”을 “법 제3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7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8호 및 제49호를 각각 제47호 및 제4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7호(중전의 제48호) 중 “법 제34조제4항”을 “법 제34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8호(중전의 제4

9호) 중 “법 제34조제5항”을 “법 제34조의2제5항”으로, “제거명령”을 “제한이나 제거명령”으로, “제7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0호 중 “법 제34조제6항”을 “법 제34조의2제10항”으로, “제거”를 “제한이나 제거”로 한다.

- 46.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
- 49. 법 제34조2의제9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 등) ① (생략) ② <u>법 제4조제3항</u> 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③ <u>법 제4조제4항</u> 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 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 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법 제4조</u> <u>제5항</u> 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 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	제8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4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4조제3항제3의2호에 따</u> <u>른 존치장애물의 변경에 관</u> <u>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</u> <u>하는 경우</u> ③ <u>법 제4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<u>법 제4조제</u> <u>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
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
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
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
행자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
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
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
간의 협의로 결정하되, 협의가
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
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
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
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
다.

④ ⑤ (생략)

⑥ 법 제34조제7항 후단에 따라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
자등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률」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
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
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
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
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법 제34조의2제4항 -----

-----.

④ 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34조의2제8항 -----

한다.

제38조(검토위원회의 기능) 검토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른
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
관한 사항

2. (생략)

제5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
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
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
공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국
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
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
업과 관련된 제1호, 제3호, 제6
호부터 제21호까지, 제23호부터
제25호까지, 제30호, 제32호 및
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.

1. ~ 45. (생략)

46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
애물의 제거 명령

47.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
애물의 제거 요구 및 장애물

제38조(검토위원회의 기능) ----

-----.

1. 법 제34조제4항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

-----.

-----.

1. ~ 45. (현행과 같음)

46.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
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요구
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
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
손실보상

<삭제>

<u>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</u> 48. <u>법 제34조제4항</u>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49. <u>법 제34조제5항</u>에 따른 장애물의 <u>제거명령</u> 및 같은 조 <u>제7항</u>에 따른 손실보상 <u><신 설></u> 50. <u>법 제34조제6항</u>에 따른 장애물의 <u>제거</u> 51. ~ 67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47. <u>법 제34조의2제4항</u>----- ----- ----- 48. <u>법 제34조의2제5항</u>----- -- <u>제한이나 제거명령</u> ----- ---- <u>제6항</u>----- 49. <u>법 제34조2의제9항</u>에 따른 <u>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</u> 50. <u>법 제34조의2제10항</u>----- ---- <u>제한이나 제거</u> 51. ~ 6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54